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잔 류 성 오 염 물 질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에서 신규 등재된 물질 중 “과불화옥탄산”이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까지 총 175종이 등재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협약 등재물질의 종류를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 조화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17. ~ 2. 26.)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협의 결과 해당 없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65호, 2017년 3월 27일 공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 부속서 비(B), 부속서 씨(C)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제18조제2항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를 “미나마타협약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를 “스톡홀름협약에”로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잔류성오염물질을 함유한 폐농약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 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1) 잔류성오염물질을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지 않은 경우				
가) 배기가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나) 폐수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100	200	300
3)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등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3)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의 결과를		100	200	300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1)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라.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200	300	500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거나 처리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1) <u>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을</u>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u>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폐유에 해당하는 폐기물</u> 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3) <u>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u> 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u>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u> 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바. 삭제 <2017. 3. 27.>				
사. 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1)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를 제외한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3)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4)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한 사항을 허위		100	200	300

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	100	100	100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	100	100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 ----- ---- 구체적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 부속서 비(B), 부속서 씨(C)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제18조(관리기준) ① (생략)	제18조(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	② ----- ----- ----- 미나마타협약에 ----- -----

다)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 (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 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잔류 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4. (생 략)

② (생 략)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에 대 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스
톡홀름협약에 -----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삭 제 >

[별표 1]

잔류성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알드린(Aldrin)
2. 엔드린(Endrin)
3. 디엘드린(Dieldrin)
4. 독사펜(Toxaphene)
5. 클로르데인(Chlordane)
6. 헵타클로르(Heptachlor)
7. 미렉스(Mirex)
8.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9. 폴리클로로리베이트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10. 디디티(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DT)
11.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PCDD)
12. 퓨란(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F)
13. 클로르데콘(Chlordecone)
14. 린덴(Lindane)
15.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Alpha hexachlorocyclohexane)
16.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Beta hexachlorocycloHexane)
17.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Tetra 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18.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19. 헥사브로모비페닐(Hexabromobiphenyl)
20.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obenzene, PeCB)
21. 과불화옥탄술포산(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PFOS-F)
22.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
23.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24.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 및 에스테르(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PCP)
25.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HCBD)
26. 폴리클로로리베이트드나프탈렌(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s)
27. 수은 및 수은화합물(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28.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BDE-209)
29.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30. 그 밖에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 가.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함유폐기물(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한다)
 - 1) 분진
 - 2) 폐촉매

< 삭 제 >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 가.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함유폐기물(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한다)
 - 1) 분진
 - 2) 폐촉매

보관·처리하지 않은 경우					우				
2) <u>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 중</u>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 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 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 관·처리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u>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u>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u>폐유에 해당</u> <u>하는 폐기물</u> 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 집·운반·보관·처리하지 않 은 경우	100	200	300	
3) <u>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 중</u>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 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 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 관·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3) <u>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u>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u>폴리클로리네</u> <u>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u> 에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 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u>별표 1 제27호에 따른 물질을</u>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 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u>별표 2 제2호에 따른 폐기물</u> 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 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바.~자. (생 략)					바.~자.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201-6782